

세금계산서와 차이 나는 매출액 (II)

글_ 조완석_ 공인회계사

회계상의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재화의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이전에 송장이나 인수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들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관행에서 회계기준은 이를 송장 대응의 인도조건을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매출인식 기준의 완성을 의미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진행율에 따른 매출인식방법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호에는 이러한 매출인식 방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그런 후에 실무에서의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월차결산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매출액을 월말에 한번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된 회계처리관행이다. 이는 회사가 월차결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회사간에 세금계산서를 월합으로 발행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자.

내부통제절차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회계상의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재화의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이전에 송장이나 인수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들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관행에서 회계기준은 이를 송장 대응의 인도조건을 완성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매출인식 기준의 완성을 의미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세금계산서 기준의 매출인식 방법과 진행률 기준의 매출인식방법의 차이를 알아보자.

SI업체의 경우 1000원의 제품을 이번 달에 납품완료하고 현업에서는 검수완료가 되었지만 재무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음달에나 인수하는 경우는 매출액 1000원은 다음달의 매출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 4/4분기에 매출액이 집중하는 SI업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12월의 매출은 대부분 차년도의 매출로 인식될 것이고 이것이

현재의 세금계산서 기준의 관행을 통한 매출액의 인식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회사의 매출액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출액 타당성 확보위한 내부절차 필요

무엇보다도 진행률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론적인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로 진행율 매출액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발생원가의 비율만큼을 매출액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총예정매출액과 총예정원가가 있어야 한다. 총예정매출액은 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총예정원가라는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외부의 시각에 대해 내부자료가 그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예정원가는 전적으로 내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그 금액이 변동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총예정원가가 변동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그 변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자의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의성을 배제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호에 언급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외부감사나 코스닥 예비심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평가되는 부분으로 진행률 매출액이 내부적인 절차 외에는 마땅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내부통제 절차를 포함한 진행율 매출의 적용에 대한 순차적인 실무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